2003년도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KDI 박사) 비공개 보고서 결론부분의 핵심내용 <3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생보사의 법률적 성격 검토

-생보사는 상법과 보험업법상의 주식회사임

2. 계약자 배당의 충분성 여부 검토

-상품계리 측면에서의 배당기준으로 볼 때 과거 계약자 배당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았는 바, 이는 과거 이익배분기준 등의 관련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였고 국내 제도가 불비하였기 때문임.

-구체적 사례를 들면, 첫째 과거 생보사는 사차익과 이차익으로 초과사업비 지출에 따른 비차손을 보전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자배당재원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생보사의 외형성장에 이용된 결과가 초래됨.

-둘째, 80년 초에 생보사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처했을 때, 계약자 배당으로 결손보전에 사용되었는 바, 교보생명의 경우 1983년에는 계약자 배당전 이익의 대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고, 계약자 배당전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1977년, 1980년, 1981년과 교보생명의 경우 1979년부터 1981년까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셋째, 납입자본이 미비한 국내 생보사들의 과거 성장의 근본적 배경이 계약자들의 유배당보험료였으나, 1990년 이전까지는 이익배분기준이 없었고, 다만 재무부 배당지침만이 존재했었는데,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특별배당으로, 1978년부터 1997년까지는 확정배당으로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배당이 아님. 1990년 이후부터 비로소 이익배분기준이 도입되지만 2003년 이전까지 계약자와 주주의 이익배분비율이 7:3인 것은 국제적 정합성(9:1)에 매우 뒤떨어지는 것임.

-그러나, 과거 배당지급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에 현행 법

령으로 과거 배당지급의 부족분을 소급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함.

3. 재평가 적립금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현재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처리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은 채무적 성격과 자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재무부가 90년에 발표한 재평가처리지침에 의거, 내부유보액이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고, 동시에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였다는 점과 양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치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임.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와 함께 자본전입에 사용한 주주지분과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의 자금원천이 동일한 연유로 재평가적립금의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상장이익 배분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상법과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계약자는 보험금 및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내부유보액이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상장이익의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